

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22-83
------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9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노년층에 대한 능동적인 노인복지 구현을 위해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를 법인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를 동의할 것을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용강노인복지관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근 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
- 노인복지법 제37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

○ 필요성

- 사회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
- 지역사회 내외 다양한 네트워크와 서비스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는 위탁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효율성 제고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: 용강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

- 노인복지관의 시설 운영,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
- 노인복지관의 시설물, 장비, 물품, 비품 등 일체
-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일체

라. 위탁시설현황

- 건물규모 : 지하1층/지상5층
- 대지면적/연면적 : 1,263㎡/3,662.05㎡
- 층별현황 (용강동 복합청사 중 3,4층을 위탁 운영)

층별	용도	면적(㎡)
5층	계단실, ELEV홀	45.05
4층	경로식당, 강당, 실버카페 등	565.73
3층	용강노인복지관, 대한노인회 마포지회	634.69
2층	자치회관, 동대본부	631.42
1층	용강동주민센터, 어린이집	707.32
지층	주차장, 다목적실	1,077.84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3. 4. 1. ~ 2028. 3. 31.(5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2022년 예산 기준)

- 소요예산: 648,302천원(전액 구비)
- 산출근거

구분	금액	비고
인건비	412,689천원	기본급, 수당, 퇴직적립금 등
운영비	69,188천원	공공요금, 수용료, 차량비 등
사업비	156,909천원	상담, 재가복지, 사회교육사업 등
시설비	9,516천원	자산취득비, 시설장비유지비
합 계	648,302천원	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,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,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
-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

자. 기타사항

- 민간위탁 추진일정(안)
 - 민간위탁체 선정 방침 수립 : 2022. 9
 - 공개모집 공고 및 심사 : 2022. 10 ~ 2022. 11
 - 협약체결 : 2022. 12

3. 관계법령

<사회복지사업법>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- ...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<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>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-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>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 2. 위탁계약기간
 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 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<노인복지법>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3. 13.>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6. 7., 2018. 3. 13.>
-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9. 2. 8.,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6. 7., 2018. 3. 13.>

<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>

제5조(운영의 위탁 등)

-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0, 2020.12.31.>